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정보

큰 사 랑 요 양 원

T E L : 0 4 2 - 2 5 8 - 5 4 0 0

전 송 : 0 4 2 - 2 8 5 - 5 3 0 0

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29명

2. 입소계약

(1) 입소대상

- 큰사랑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자

(2)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큰사랑요양원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보건복지부 입소 상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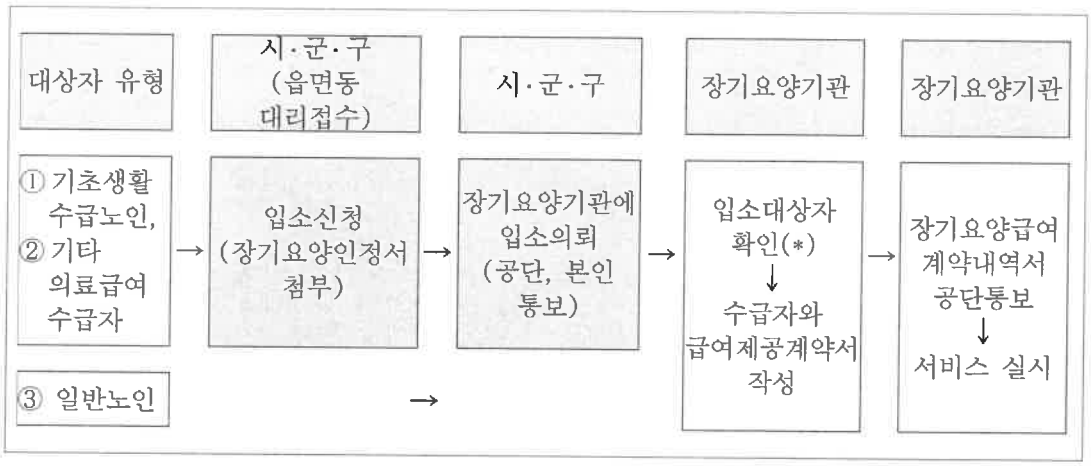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 이용신청서 제출)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3) 입소서류

큰사랑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주민등록증 사본 1매 (입소자, 보호자)
4.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7.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8.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4) 입소계약

- 큰사랑요양원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을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년 단위로 시설 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큰사랑요양원

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큰사랑요양원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특별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⑦ 계약서 -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⑧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⑨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큰사랑요양원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⑩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큰사랑요양원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⑪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큰사랑요양원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2. 장기요양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3. 필요시 의료 이용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

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이엘요양원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큰사랑요양원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4. 시설물 사용상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큰사랑요양원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구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사회복무요원	누계
복지행정팀	1		1	-	-	-	-	-			1	1	4
간호팀 재활팀 요양팀	-	-	-	1	1	7		-					9
영양 위생팀	-	-	-	-	-	-	-	-					0
인원	1	0	1	1	1	7	0	0	0	0	1	1	13

2. 주.야간, 평.휴일 종사자 인력

	평일 주간	평일 야간	휴일 주간	휴일 야간
복지행정팀	5	0	2	0
간호팀 요양팀	5	2	3	2
영양팀 위생팀	0	0	0	0

3. 종사자 세부사항

2024년 01월 01일 기준 큰사랑요양원 직원 현황

번호	이름	직위/직책	업무내용
1	변동명	시설장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2	서선영	사회복지사	입소자 관리 및 행정,회계,시설관리업무 사회복지사 업무
3	유경연	간호조무사/간호팀장	어르신 건강 관리 및 간호업무
4	최명자	위생원	어르신 세탁 관리 및 시설 환경관리
5	정호건	사회복무요원	시설관리 지원 및 어르신 케어 지원
6	목동균	계약의사(촉탁의)	입소어르신 건강관리
7	지재경	요양보호사	입소자 케어,세탁,위생청결업무 일지작성
8	이종인	요양보호사	입소자 케어,세탁,위생청결업무 일지작성
9	이선희	요양보호사	입소자 케어,세탁,위생청결업무 일지작성
10	최현자	요양보호사	입소자 케어,세탁,위생청결업무 일지작성
11	곽양일	요양보호사	입소자 케어,세탁,위생청결업무 일지작성
12	안희경	요양보호사	입소자 케어,세탁,위생청결업무 일지작성
13	윤희정	요양보호사	입소자 케어,세탁,위생청결업무 일지작성
14			
15			
16			
17			
18			
19			
20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등급 1, 2, 3, 4, 5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월 입소 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1일	본인부담금	522,280	484,530	457,560	457,560	457,560
	식재료비 (간식비포함)	319,300	319,300	319,300	319,300	319,300
	상급침실료	0	0	0	0	0
	합 계	841,580	803,830	776,860	776,860	776,860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식사재료비

- 1끼 3,100원 (1일 / 9,300원 간식비 1,000원, 31일 / 319,300원)

2. 촉탁진료비, 의료비, 약제비 등

- 비용 발생 시 본인부담

3. 기타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

- 상급침실 : 1일/0원

[참고자료]

2024년 입소비용 안내

1. 입소 수가 내역

2024년 입소비용에 관한 내역입니다. (단위 : 원/일)

시설구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노인요양시설	841,580/31일	803,830/31일	776,860/31일

2. 비급여 항목 내역

❍ 식재료비 : 1일 3식 9,300원 간식비 1일 1,000원　　상급침실료 : 1일 0원

[1개월 입소 비용 계산법 예]

❍ **1등급이신 어르신께서 31일을 큰사랑요양원에 계실 경우**

31일 x 1등급 1일 급여비용 x 20%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식재료비,간식비) = 한 달 시설 입소 비용

1등급 어르신	2등급 어르신	3,4,5등급 어르신
841,580	803,830	776,860

5 시설의 규모 및 설비

1. 시설규모

(1) 면적

- 1.001.90㎡

(2) 용도

- 노유자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2. 시설설비

구분	대지면적		542.80㎡			연면적			1,815.760㎡		
	사무실 (1층)	간호사실 (3층)	특별촬실	요양보호사 (2층)	물리치료실 (3층)	프로그램실/오락실 (2층)	식당및조리실 (4층)	화장실 (각층)	세면장/목욕실 (3층)	세탁실/세탁물건조장 (2층)	비상재해대비시설
	1	1	1	1	1	1	1	10	1	1	1

생활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1	1	6	1

6 화재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상 품 명 : 한화손해보험

❍ 보장기간 : 2023년 09월 30일부터 2024년 09월 30일

2.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상 품 명 : 한화손해보험

❍ 보장기간 : 2023년 09월 30일부터 2024년 09월 30일

3. 화재보험 가입

❍ 상 품 명 : DB손해보험

❍ 보장기간 :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20일